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의안번호	15421
------	-------

제안연월일 : 2025. 12.

제안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 대안의 제안경위

건명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발의일	심사경과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5634	이만희의원	'24. 11. 15.	-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25.2.18.)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 후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
	2205798	안호영의원	'24. 11. 22.	-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4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5.11.26.) 상정

가.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4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025.11.26.)

에서 위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나.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

는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수목원을 수목유전자원의 수집·증식·보존·관리·전시 등을 하는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산림청장은 5년마다 수목원·정원진흥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또한, 현행법은 수목원조성예정지 지정기간을 최장 8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수목원 운영자에 대한 시정요구와 자료제출요구 관련 규제를 규정하는 한편, 동 규제에 대하여 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수목원은 해당 기능 외에도 다양한 교육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수목원·정원진흥기본계획의 효율적인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수목원조성예정지 지정으로 인한 과도한 재산권 행사 제한에 대한 우려와 수목원 운영자에 대한 시정요구와 자료제출요구 규제의 유지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수목원의 정의 및 사업 범위에 교육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산림청장이 수목원·정원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수목원·정원을 운영하는 자 또는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며, 수목원조성 예정지 지정기간을 단축하는 한편, 수목원 운영자에 대한 시정요구 및 자료제출요구에 관한 규제의 재검토를 폐지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수목원의 정의 및 사업 범위에 교육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2

조 및 제3조).

나. 산림청장이 수목원·정원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수목원·정원을 운영하는 자 또는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듣도록 의무를 부과함(안 제6조제7항 신설).

다. 수목원조성예정지의 지정기간을 최대 5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을 최대 3년 이내에서 1년 이내로 각각 단축함(안 제6조의2).

라. 수목원 운영자에 대한 시정요구와 자료제출요구 규제에 대한 산림청장의 재검토 근거를 삭제함(제23조의2 삭제).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전시하고”를 “전시하고,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며,”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관리 및 전시”를 “관리·전시 및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교육”으로 한다.

제6조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산림청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수목원·정원을 운영하는 자,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6조의2제3항 본문 중 “5년”을 “3년”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3년”을 “1년”으로 한다.

제23조의2를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및 제6조

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목원조성예정지 지정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수목원조성예정지로 지정된 경우에는 제6조

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수목원”이란 수목을 중심으로 수목유전자원을 수집 · 증식 · 보존 · 관리 및 <u>전시하고</u> 그 자원화를 위한 학술적 · 산업적 연구 등을 하는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시설을 갖춘 것을 말한다. 가. ~ 라. (생 략)	1. ----- ----- -----전시하고, <u>수목유전자원에 관한 교육을</u> <u>실시하며,</u> ----- ----- ----- -----.
1의2. ~ 7.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제3조(사업) ① 수목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다만,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업은 제5조제1항에 따른 국립수목원에서 수행한다.	1의2. ~ 7. (현행과 같음)
1. 수목유전자원의 수집 · 증식 · 보존 · 복원 · 관리 및 전시	제3조(사업) ① ----- -----.
2. ~ 13. (생 략)	-----
② · ③ (생 략)	----- 관리 · 전시 및 <u>수목유전자원에 관한 교육</u>
제6조(수목원 · 정원진흥기본계획	2. ~ 13.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6조(수목원 · 정원진흥기본계획

<p>등의 수립) ① ~ ⑥ (생 략)</p>	<p>등의 수립) ① ~ ⑥ (현행과 같음)</p>
<p><u><신 설></u></p>	<p><u>⑦ 산림청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수목원·정원을 운영하는 자,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u></p>
<p><u>⑦ (생 략)</u></p> <p>제6조의2(수목원조성예정지의 지정·해제 등) ① · ② (생 략)</p>	<p><u>제6조의2(수목원조성예정지의 지정·해제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u></p>
<p><u>③ 수목원조성예정지의 지정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u></p>	<p><u>③ ----- -----3년-----. ----- -----1년 ----- -----.</u></p>
<p><u>④ ~ ⑥ (생 략)</u></p> <p><u>제23조의2(규제의 재검토) 산림청장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시정 요구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요구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u></p>	<p><u>④ ~ ⑥ (현행과 같음)</u></p> <p><u><삭 제></u></p>